

보도시점 2025. 12. 1.(월) 09:00 배포 2025. 12. 1.(월) 08:00

'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

-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, 자본준비금 감액
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

기획재정부는 「2025년 세제개편안('25.7.31.)」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
개정 과제 중, '26.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
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*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.

* 증권거래세율 환원: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: 소득세법 시행령
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'25.12.1.~12.15.), 차관회의·국무회의
등의 절차를 거쳐 '26.1.1.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※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첨부】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담당 부서	세제실 금융세제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230)
		담당자	사무관	전동표 (jdongp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남원우 (namwonwoo@korea.kr)

1. 증권거래세율 환원(증권령 §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거래세 세율 ○ 기본세율: 0.35% ○ 탄력세율 ① (코스피) 0%(농특세 0.15%) ② (코스닥·K-OTC) 0.15%(농특세 없음) ③ (코넥스) 0.1%(농특세 없음)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율 조정 ○ (좌 동) ○ 탄력세율 ① 0.05%(농특세 0.15%) ② 0.20%(농특세 없음) ③ (좌 동)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2.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(소득령 §26의3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</p> <p>○ 「상법」 §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<신 설></p> <p>- 다만,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대주주등*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→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</p> <p>*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(K-OTC에서 거래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</p> <p>- (좌 동)</p>

<개정이유>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